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89

발의연월일: 2021. 7. 28.

발 의 자: 박찬대·강민정·박재호

서동용・권인숙・유동수

김홍걸 • 윤후덕 • 이성만

신영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은 '시·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'으로 적시하 고 있어, 타 법률과 용어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한편, 교육자치 확대 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, 각 시·도의 '교육행정기관의 장'을 '교육감'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,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자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조, 제5조의2, 제11조및 제13조 등)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"교육행정기관의 장"을 각각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2항 본문 중 "교육행정기관의 장"을 "교육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교육행정기관의 장"을 "교육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교육행정기관의 장"을 "교육감"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"교육행정기관의 장"을 "교육감"으로 하고, 같은 조제9항 중 "시·도"를 "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"로 하며, "제2항 각 호"를 "제2항 및 제8항"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"교육행정기관의 장"을 각각 "교육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보통교부금의 교부) ① (생	제5조(보통교부금의 교부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	2
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	
에는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	
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	
"시·도"라 한다)의 <u>교육행정기</u>	교육감
<u>관의 장</u> 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	
알려야 한다. 이 경우 교육부장	
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,	
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	
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·도 <u>교</u>	교육감
<u>육행정기관의 장</u> 에게 송부하여	
야 한다.	
제5조의2(특별교부금의 교부) ①	제5조의2(특별교부금의 교부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	②
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	
발생하여 시·도의 <u>교육행정기</u>	교육감
<u>관의 장</u> 이 특별교부금을 신청	
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	
부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에 해	
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	

는	교육년	부장관이	필요하다	구고
인정	하는	경우에는	: 신청이	없
어도	일정	한 기준	을 정하여	특
별교	부금을	을 교부할	수 있다.	

- ③ (생략)
- ④ 시·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교육부장관은 시·도의 <u>교육</u> <u>행정기관의 장</u>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 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 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- 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 ① 저 •② (생 략)
 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 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 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

③ (현행과 같음)	
④ <u>교육감-</u>	
(5) <u>n</u> d	-
<u>감-</u>	
· ⑥ (현행과 같음)	
₩ (
· ② (현행과 같음)	
3	
	

- 지 해당 시·도의 <u>교육행정기관</u>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~ ⑧ (생 략)
- ⑨ <u>시·도</u>는 관할구역의 교육·학 예 진흥을 위하여 <u>제2항 각 호</u>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.
- ⑩ (생략)

제13조(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 신청) ① 시·도의 교육행정기관 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 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 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 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 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 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<u>교육감</u>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<u>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</u>
제2항 및
<u>제8항</u>
⑩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
신청) ① <u>교육감</u>
②
<u></u>
— 육감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